전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 287,2014고단1403(병합)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협박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고단287, 2014고단1403(병합)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

피고인 A

검사 서봉하(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13. 3.부터 2013. 11.까지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이며, 피해자 E, F, G, H, I은 각각 위 아파트 동대표이다.

「2014고단287」

1.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가. 명예훼손

(1) 2013. 10. 2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8. 07:5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경비한테 갈비를 받아먹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102동 507호 회장놈 나와라. 네 높은 동대표 자격 없다. 주민들이 해임한다고 서명까지 했다. 경비한테 갈비나 받아먹고 치사하게 사는 부도덕한 놈. 관리비가 다 새고 있다. 자치회장, 관리소장, 대표들의 비리에 의해서 관리비가 새고 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2013. 10. 2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9. 19:3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경비한테 갈비를 받아먹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102동 507호 자치회장 D 나와라. 갈비받아 처먹은 놈, 떳떳치 못한 도둑놈이라 전화도 안 받는다. 사기꾼, 관리비가 다 새고 있다. 자치회장, 관리소장, 대표들의 비리에 의해서 관리비가 새고 있다."라며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1) 2013. 9.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9: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들, 관리소장 [등이 모여 아파 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 관련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 "씨발, 좆같이. 이건 공사 못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공사를 하냐. 개찰 못한다." 등으로 소리치며 개찰 관련 서류를 밀어버리는 등으로 회의진행을 막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폐쇄회로 설치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1.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17: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들, 관리소장 [등이 모여 승강 기(일명 '엘리베이터') 비상벨 설치공사 관련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 "왜 비밀로 개찰을 하냐. 방송도 해야지. 비밀로 하는 것은 약점이 있는 것이다. 업체 선정되어도 시끄러워 서 공사를 못할 것이 니까, 그만둬라." 등으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회의진행을 막으며 행패를 부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엘리베이터 비상벨 설치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가. 명예훼손

(1) 2013. 11.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6.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대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 D이 위 아파트를 망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입찰을 안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여 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나는 너한테 말끝마다 욕을 한다. 싸기지 없는 놈. 비상벨을 할게 아니라 잘못한 놈을 총살 시켜야 돼. 이 남자가 아파트를 다 망해먹고 있다. 공개입찰 안하고 쉬쉬하며 업자 2명, 소장, 회장이 우물딱 주물딱 한다. 나는 끝까지 업무를 방해하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 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1. 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8, 19:00경 위 아파트 102동 5-7라인 현관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무능력자 도 아니고 소장한테 휘둘리는 것도 아니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아파트 동대표회장직을 유지하는 것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노인회장 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저건 무능력자야. 아무 것도 몰라. 소장한테 휘둘 려. 뭐 먹으려고. 회장 안 내놔. 갈비 처먹었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2013. 11.5. 16:30경 모욕

피고인은 2013. 11. 5. 16:30경 위 아파트 뒷길 대로변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언제 사표 써. 좆을 뺄 놈. 아파트 돈 다 빼먹는다. 관리소장한테 놀아나는 멍청이, 얼굴에 침을 뱉을 놈, 개좆 같은 놈,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11. 5. 17:00경 모욕

피고인은 2013. 11. 5.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소장과 아파트 직원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까고 자빠졌네. 씹할, 정말 그만해, 자식아. 이놈 아, 에라 이 싸가지 없는 놈, 개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3. 11. 5. 18:10경 모욕

피고인은 2013. 11. 5. 18:1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자식아, 씹할. 에라이 개새끼야, 정신병자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씹할, 개씹허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403」

3. 피고인은 2013. 10. 8.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왜 거짓말, 계약금 줬다고, 죽고 싶냐, 자진사표"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8.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22, 24, 28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증인 D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D, K의 각 진술서
- 1. L. M. N의 각 확인서
- 1. J, D의 각 사실확인서
- 1. 고소장 및 각 위임장
-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욕설내용 기재 관련)
- 1. 전수시청 사이버 민원신고 내용, 경비일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녹취록, 제2경비일지 「2014고단140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각 고소장, 추가고소내용 요약서
-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메모지, 각 녹취록
- 1. O, F, G, J, H 공동 명의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명예훼손죄 사이 및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업무방해죄 사이에 각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

다수의 입주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동대표들이나 동대표의 회장 등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한편, 주민들도 자신들이 대표자로 선출한 동대표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당한 활동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거액을 들여 아파트 내 CCTV를 설치하는 추진하는 입주 자대표자회의 측의 방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반대 측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자회의 측의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다소 과격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하거나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대표인 피해자들이 경비원으로부터 갈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동대표회장인 D이 명절 무렵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선물에 해당하는 저가의 돼지고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동대표나 경비원 등에게 물어 확인함으로써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동대표 나 경비 등의 답변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동대표들이 경비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물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순히 자신의 의견개진 정도를 넘어 욕설을 하거나 회의 서류를 밀어버리는 등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하였으며, 더욱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관리소장과 결탁하여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전횡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친 욕설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D을 모욕한데다가, 수시 차례에 걸쳐'죽고 싶냐'거나 '위 피해자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자 Dol 한자교사로 일하는 학교나 교육청을찾아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한 CCTV 도입사업에 관한 입찰 관련 공고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어 관할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앞서 살펴본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도를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형법 제2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그 내용이 형법 제

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범죄사실 기재와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범죄사실 제3항 기재 순번 16, 19, 29의 각 행 위도 그 전후의 사정이나 다른 협박행위와의 연계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만으로도 피해자 D 을 위해할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방법과 그 횟수 및 내용, 수사 및 공판과정 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개 연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하고 모욕까지 당한 피해자 D이 이를 이유로 임기만료 전에 동대표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강사직도 사임하였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나 피해회 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점(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모두 친고죄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화해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법원이 그와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지한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D 으로부터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 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파사 이순형